

노인학대란

노인학대 유형

그러나 혹시?

“나의 행운”을 찾기위해 ‘남의 행복’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켜주지않는 노인학대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알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한겨울노부모냉방에가둬방치_중앙일보
육실에 주먹질발길...아들이노부모상습폭행_국민일보
노인자녀에게학대받는노인부모늘었다_SBS
학대로피명든노인들“그래도내자식인데...”연립뉴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신체적 학대일까요?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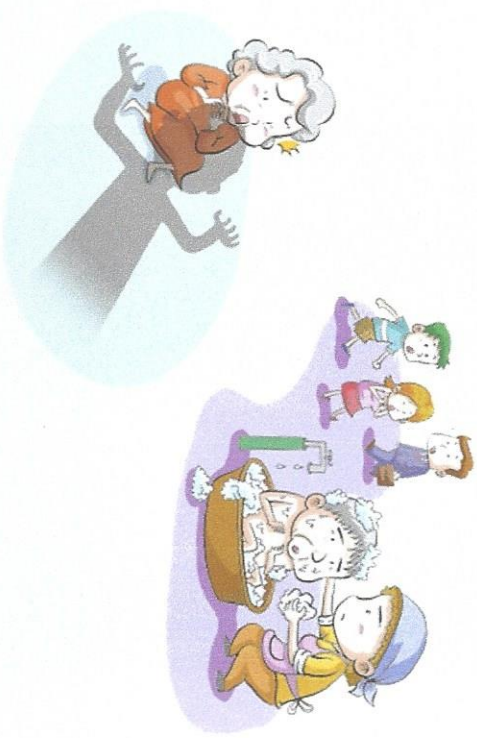


어떤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일까요?

- 고향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어떤 행위들이 성적 학대일까요?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경제적 학대일까요?

-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챌다.
-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어떤 행위들이 방임일까요?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학대 피해실태

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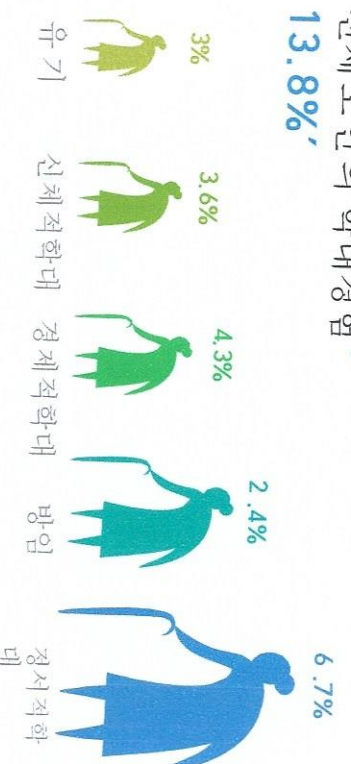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어떤 행위들이 유기 일까요?
- 연락을 두절하고 왕대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학대 경험 및 학대유형

전체 노인의 학대경험
13.8%



<2009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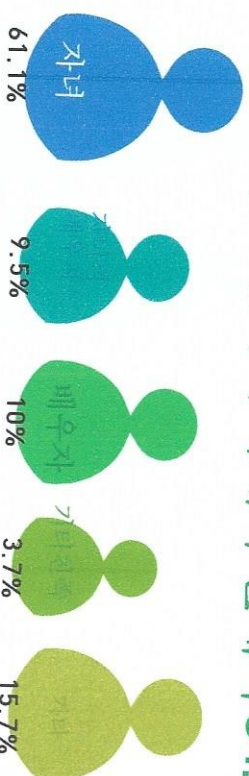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현황



<201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처벌

신고사태 중 친족의 학대가 전체의 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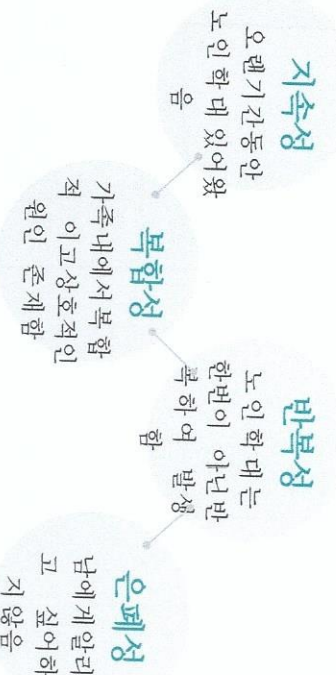


노인학대는 점진적으로 심각해지고 재발될 수 있음

학대 사례의 과반수 이상

- 학대가 매일 또는 1주일에 1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 학대가 1년 또는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노인학대의 특성



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기준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구결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결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인학대 법적 처벌기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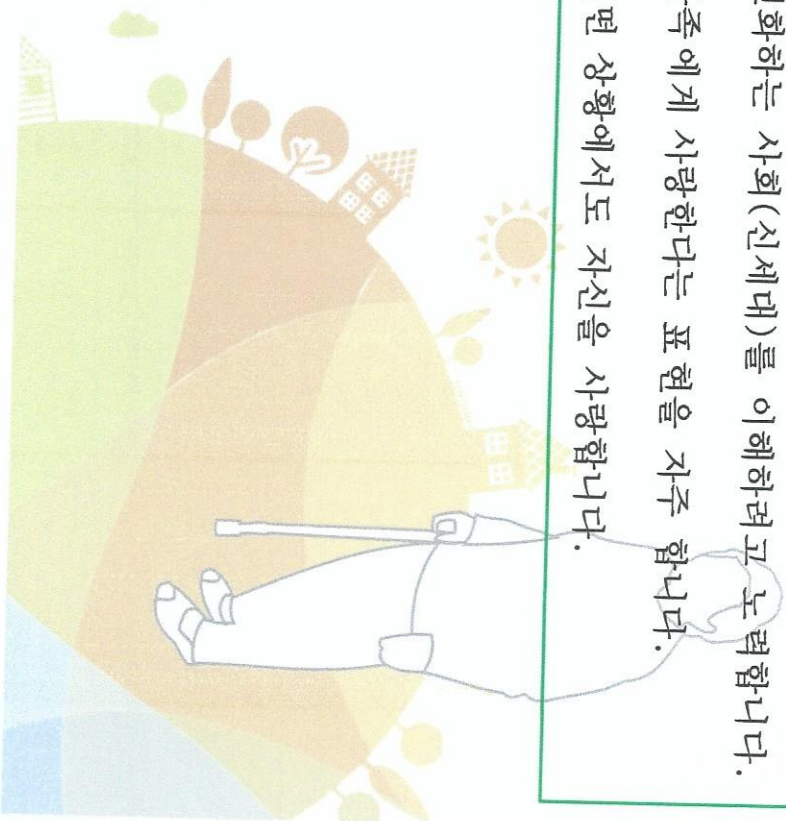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1.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2. 다름,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4.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5.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6.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7.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는 가려 숨겨진 누군가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당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 로 신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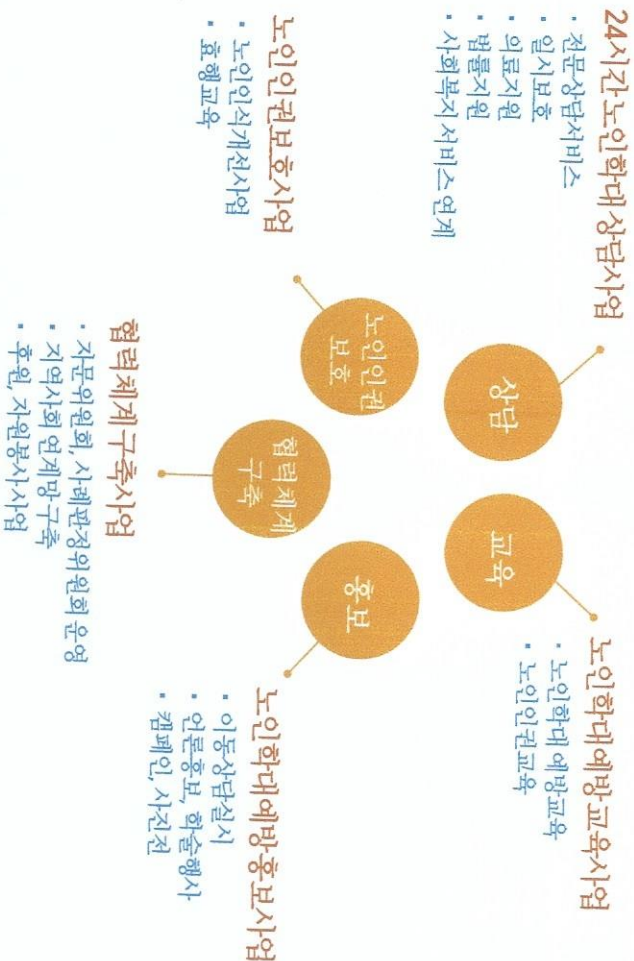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우리의 역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노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 실시

사업내용



노인학대 지킴이 활동

1.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린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한다.
3.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함께 한다.
4.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핀다.
5. 노인 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한다.
1577-1389 는 나와 벗을 모두 지키는 번호
6. 노인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기타 노인 인권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어르신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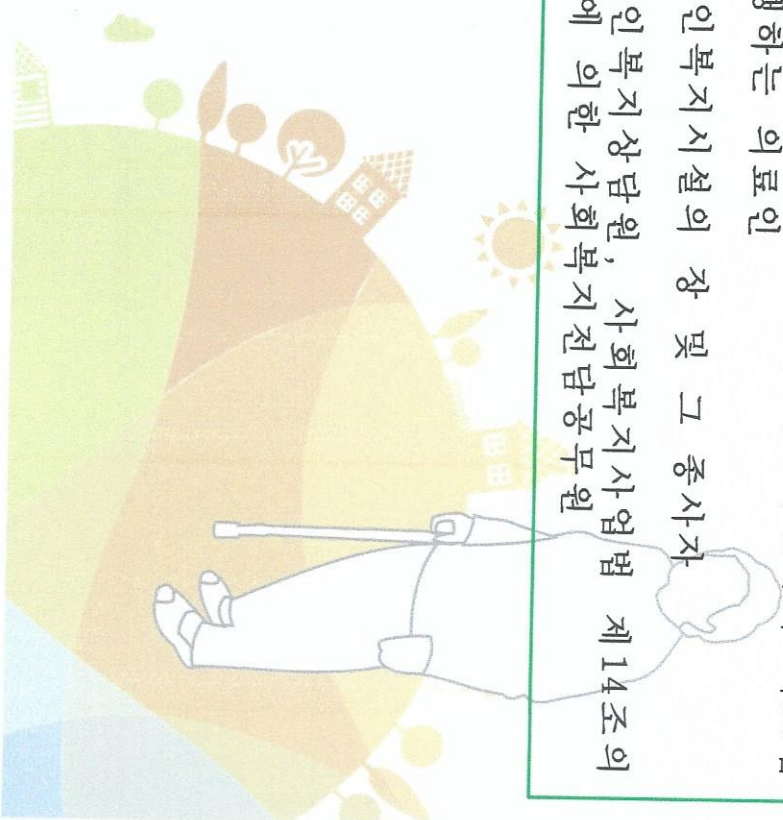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학대 신고방법

- 응급 상황 (학대 피해 노인 대처 방안)



도움요청 피신 신고 증거확보

* 피신할때 가져갈물건: 현금, 신분증, 인감, 카드, 약

- 비응급 상황



신고 증거확보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신고자의비밀보장

신고인의개인정보에대한비밀을보장합니다

신분은보장되어아하며

그의사에반하여신분이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노인학대 대응방안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 서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동안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자녀나 타인의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노인학대 예방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태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